

파주시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,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안으로 개정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, 기금은 파주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-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-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시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내용상 적정한 것으로 생각됨.

다만, 개정조례안 제12조제1항의 경우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불부합되므로 수정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됨.

파주시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

제12조(기금의 결산)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법

제125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개정. 99년 8월31일, 시행. 2000년 1월1일)